

서울고등법원 2022. 7. 15 선고 2022나2004517 판결 [주식매매대금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광재

피고, 항소인 1. B 주식회사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재철

변 론 종 결 2022. 6. 24.

판 결 선 고 2022. 7. 15.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2. 선고 2020가합4404 판결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6,530,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준영, 판사 민달기, 판사 김용민